

# 제주지역 장애인 평생교육의 제도화 방안\*

김 민 호\*\*

## 〈 목 차 〉

- I. 서 론
- II. 평생교육의 등장과 제도화
- III. 장애인 평생교육의 의미
- IV. 우리나라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법과 전달 체계
- V. 제주지역 장애인 평생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
- VI. 외국의 장애인 평생교육의 법제화
- VII. 결론 : 제주지역 장애인 평생교육의 제도화 방안

## I. 서 론

우리나라에서 평생교육에 관한 논의는 이미 30여 년 전부터 있었다. 그러나 평생교육의 이념과 제도를 장애인 교육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그다지 많지 않다. 1999년에 공포된 평생교육법 조차 장애인 교육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한편 장애인 단체와 장애인 관계 기관들은 교육복지 차원에서 장애인의 교육권을 꾸준히 주장해 오고 있다(장애인교육권연대. <http://edu.st.to>). 하지만 평생교육 차원의 논의로 발전하고 있지는 못하다.

\* 2005. 7. 1. 탐라장애인복지관에서 열린〈장애인 평생학습 세미나〉에서 “평생학습사회에서 장애인의 평생 교육 참여와 발전방안”이란 제목으로 주제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했음.

\*\* 제주교육대학교 교수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평생교육의 일반적 특징과 제도 그리고 장애인 평생교육의 의미에 비추어, 제주지역 장애인 평생교육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진단하고 그 문제점을 분석한 뒤, 외국의 장애인 평생교육의 법제화 사례에 비추어 제주지역 장애인 평생교육의 제도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 Ⅱ. 평생교육의 등장과 제도화

### 1. 평생교육의 등장 배경

평생교육은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적 요구를 기존의 교육체제가 충족시키지 못하는 데서 비롯했다. 전통사회에서는 소수의 사람들이 단순한 성격의 교육을 필요로 했으나, 현대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양한 교육을 요구한다. 우선, 현대사회의 새로운 교육적 요구를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김신일, 1983:53-71).

첫째, 산업화 및 탈산업화와 그 여파로 인해 교육의 요구가 다양해졌다. 산업구조의 변화로 산업부분은 물론이고 비산업부분에서도 취업과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의 수준이 크게 높아졌고, 도시화는 도시이주인구의 교육요구 곧 직업기술교육, 도시생활 적응교육을 유발했으며, 가족구조와 기능의 변화로 가족 구성원들의 교육적 요구가 높아졌다. 종류 이상 비취업 가정주부들은 증가한 여가시간을 교육적으로 활용하려 하고, 수명의 연장은 정년 및 가족 기능의 변화와 아울러 노년층의 노인교육은 물론이고 장년층들의 노년기 준비교육의 필요를 증대시켰다.

둘째,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과 그에 따른 직업세계의 변화는 지식의 절반이 진부해지는 기간인 반감기를 끊임없이 감소시키고 있어 직업세계의 재교육 내지 계속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끊임없는 변화는 사회 그 자체의 불확실성을 증대시켰고, 그만큼 고정된 인간형의 사회화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동시에 주체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인간을 요구한다.

셋째, 교육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던 특수집단들 예컨대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지위의 사람들, 이민자, 단기체류 노동자, 장애인, 시골사람 등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넷째, 교육적으로 소외되어 왔던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만이 아니

라. 지금껏 소외돼 왔던 사회적 소수집단들이 지식을 새롭게 정의, 분배 및 평가할 것을 요구한다. 즉, 지식의 민주화 차원에서 모든 교육제도의 교육과정을 새롭게 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에 기존의 학교 본위 교육체제는 산업주의, 국가주의, 계몽주의 이념에 근거한 교육체제로서 위에서 열거한 현대사회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성공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

첫째, 교육시기에 한계를 지닌다. 기간학제는 대체로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국한 되고 일단 학교노선에서 이탈하면 되돌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뒤늦게 성인기에 학교교육을 시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나 실현성이 매우 낮다. 물론 방계학제가 존재하나 이 경우는 학력을 인정받지 못한다. 요컨대 학교의 본질이 성인생활을 위한 아동기의 준비에 있는 한, 학교가 모든 연령층의 교육을 맡으리라 기대할 수 없다.

둘째, 교육기회의 한계다. 학교는 근대사회 이래로 능력주의에 따라 교육선발, 사회적 선발의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능력주의를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기회의 분배가 귀속적 요인에 의해 왜곡되는 현상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난다. 그리하여 학교는 능력주의적 선발장치가 아니라 기존의 계층구조를 재생산하고 지배 엘리트의 이익에 봉사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셋째, 교육방식에 한계를 나타낸다. 학교는 초등학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법률에 의해 제도화되어 있다. 학교의 설립과 운영, 수업연한, 수업일수, 교육과정, 입시제도, 정원 등등이 법의 규제를 받는다. 즉, 학습자가 학교의 교육방식에 맞추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학교본위 교육체제의 경직성은 교육의 중앙집권화로 더욱 굳어져 왔다.

넷째, 교육내용도 제한적이다. 학교의 교육내용은 전통적으로 인문지향적 교과로 구성되어 있다. 게다가 외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경우, 그 외국과 직접적 관계를 갖는 지배층은 외국문화에 대한 선호가 높아 학교의 교육내용에 전통 고유문화보다는 외래문화 지향성이 높게 나타난다. 이렇듯 학교의 교육내용은 일반대중의 생활문화, 작업문화와 유리된 것이어서 생활과 직업세계에서 형성된 현대 사회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한계가 있다.

## 2. 평생교육의 일반적 특징

평생교육은 이념적 지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일반적 특징을 지닌다

(Kirpal, 1976:98-101).

첫째, 확장성(expansion)이다. 이는 평생교육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평생교육은 종전의 학교교육이나 성인교육에 비해 학습시간, 학습영역과 내용 및 학습상황의 확장을 요구한다. 그 이면에는 일과 여가 그리고 교육에 대해 새로운 태도가 깔려 있다.

둘째, 혁신성(innovation)이다. 확장의 원리는 매혹적인 전망과 새로운 양식을 열어주는 혁신의 필요를 제기한다. 즉, 대안적인 학습의 구조와 유형을 발견하고, 학습자가 선택할 수 있는 학습기회의 창출을 통해 혁신을 고무하고 가치롭게 여기며 아울러 기회·동기·학습가능성 등이 실현될 수 있는 학습풍토를 조성하며, 학습내용의 유연성과 다양성 추구, 적절한 학습도구와 기법의 활용, 학습시간과 장소의 자유로운 선택 등을 모색한다. 결국, 이러한 혁신은 인간 모두에게 자아실현의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인간 정신의 고양과 해방에 기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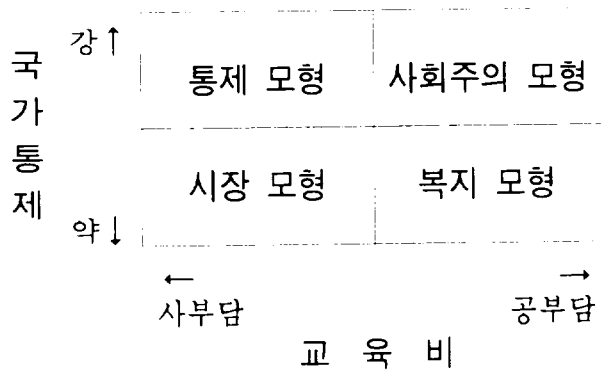
셋째, 통합성(integration)이다. 통합성은 학습조직을 충분히 마련하고 이들 간의 연계를 의미 있게 모색하여 확장과 혁신의 과정을 촉진한다. 사실 통합이 없는 확장은 많은 비용을 요구하고 낭비적이게 되며, 통합 없는 혁신은 성공하기 어렵다. 평생교육에서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통합을 모색한다. ① 지식의 통합으로 학제간 연구의 실현 및 지식의 양적 팽창에 따른 질적 가치를 고양하는 일이다. ② 가정·지역사회·보다 더 큰 사회·일과 매스 미디어의 세계 등의 교육적 잠재력을 통합해 이른바 교육의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교육의 과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고 새로운 학습상황을 창출하는 것이다. ③ 신체적, 도덕적, 미적 및 지적 발달 등 인간발달의 제 측면을 통합하는 것이다. ④ 학교교육 이전, 학교교육, 학교교육 이후 및 순환교육 등 학습의 제 단계를 통합하는 것이다. 요컨대 평생교육은 '기능적 통합'과 '제도적 통합'을 추구한다고 말할 수 있다.

### 3. 평생교육의 제도화

교육제도는 한 사회의 개인 및 국가의 교육을 위한 수단으로서 교육목적을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는 기제이다(노종희 외, 1996:56). 그런데 평생교육은 확장성, 혁신성, 통합성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평생교육 제도는 기존의 학교 중심 교육제도를 넘어서서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 지역사회, 기업 등에서의 교육을 총체적으로 포괄해야 한다. 또한 평생교육 제도는 학교에 다른 교육을 편입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기존 교육제도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신성을 내포해야 한다. 학교교육과는 다른 교육의 지배구조와 목적을 지니는 것이다. 국가 주도 아래 전통적인 지식과 이론을 가르치던 교육을 넘어 기업, 지역사회 및 다양한 조직이 민주적 지배구조 아래 삶과 직결된 내용을 가르치는 교육을 지향해야 한다. 요컨대 평생교육 제도에서는 교육시기의 연장, 교육장의 확대, 교육제도의 개방 및 교육지배의 민주화를 찾아 볼 수 있다(김신일·김재웅, 2002:29-51).

그러나 아직 평생교육 제도를 완성시킨 나라는 없고 학교 중심 제도로부터 평생교육 제도로 접근 중에 있다. 교육제도에 학교와 대학 이외의 교육을 포함시키고, 다양한 교육 상호간 연계를 확대하며, 이제까지 무시되었던 다양한 교육기관과 프로그램을 인정한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나라의 평생교육 제도가 동일한 것은 아니다. 교육제도의 관리 방식 곧 지배구조와 비용 부담 주체에 따라 평생교육 제도는 다음 <그림 1>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림 1> 평생교육 제도의 유형

특히 권위주의적 국가 관리의 교육을 벗어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누가 평생교육을 주도할 것인가, 즉 누가 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며, 누가 교육상황을 통제하느냐의 문제는 오늘날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흐름 아래 자본의 교육지배, 평생교육의 상품화 및 평생학습 기회의 불평등화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교육비를 학습자에게 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지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사항이다.

통제모형은 교육목적, 대상 및 내용을 국가가 직접 결정하고, 교육기관의 설치와 운

영도 국가가 직영하거나 엄격하게 통제한다. 교육재정은 국가가 어느 정도 부담하지만 대부분을 학습자가 부담한다. 교육비를 학습자가 부담하면서도 통제를 받는다는 게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통제모형에서는 해로운 교육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논리로 교육에 대한 국가의 감독을 정당화한다. 이 모형은 전체주의 국가 혹은 국가주의 교육체제를 선택한 나라에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개혁 과정에 있으나 아직 이러한 특성이 강하다.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소규모 과외 교습소를 포함한 학원, 시민대상의 성인교육에서도 국가가 법률에 의거 감독, 통제한다.

사회주의 모형은 국가가 사회주의 이념에 근거해 교육목적과 내용을 철저히 통제하고, 교육방법도 엄격히 관리하며, 대상의 선정에도 관여한다. 성인교육에서도 그 중심은 사회주의 정치이념 학습이다. 사유재산을 철저히 배제하므로 학교교육은 물론 성인교육에서도 학습자의 부담은 없다. 소비에트 연방을 비롯한 구 사회국가들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구 사회주의국가들이 와해하거나 부분적으로 시장경제를 도입하면서 성인교육에서도 학습자 부담의 상업적 교육기관이 나타나고 있다. 사회주의 모형에서 점진적 통제모형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복지모형은 평등주의 이념에 바탕을 두고, 국민들이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교육기회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유상인 경우 교육을 받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나 공공재정에서 부담한다. 교육이 사회의 유지, 발전만이 아니라 개인의 생존과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육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지만 교육의 목적은 국가주의를 지향하지 않고 개인의 자아실현에 두는 일이 가능하다. 성인교육에서도 될 수 있는 대로 각자가 필요하고 원하는 내용을 제공해 준다. 북유럽 여러 나라의 교육이 여기에 속한다.

시장모형의 사상적 기초는 개인주의이다. 교육을 사회의 공적 사업이 아니라 개인적 활동으로 인식한다. 개인의 요구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교육에 드는 비용도 학습자가 부담한다. 교육이 상품으로 인식되어 교육기관은 공급자로, 학습자는 수요자로 규정된다. 이 모형에서는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교육은 축소되고 국가의 통제력도 약화된다. 이 모형은 20세기말에 밀어닥친 경제세계화의 여파로 많은 나라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선회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순수한 시장모형의 교육제도를 수립한 나라는 없다. 현대사회의 교육제도가 근대 국민국가의 국민교육에 목적을 두고 형성되었기에 어느 나라도 교육의 공공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오늘날의 정책 변화는 공교육 중심 제도에 시장원리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단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교육의 공공인프라가 빈약한 상태에서 자본주의적 시장원리를 밀어붙이면 교육의 공공성은 파괴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사회의 불평등 구조가 급속하게 심화될 수 있다. 따라서 평생학습 제도를 구축할 때 낭만주의에 빠지는 것도 문제이지만 자본의 논리에 지배당하는 것은 더 큰 문제이다.

### Ⅲ. 장애인 평생교육의 의미

#### 1. 장애인 교육의 확대

무엇보다도 장애인의 교육기회 확대 차원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1978년 '특수교육진흥법' 제정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최초로 법제화했다. 이 법은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의 장애인 교육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특수교육진흥법을 토대로 우리나라 장애인 교육이 특히 어린 학생들을 중심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장애인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특수교육진흥법은 모든 장애인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요람에서 무덤까지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1978년 특수교육진흥법 제정 당시 고등학교를 졸업할 나이인 만 18세 이상의 성인들, 지금으로 치면 만 45세 이상 성인 장애인들, 특히 선천성 장애인들 중에는 특수교육진흥법에 따른 학교교육을 받아 본 사람들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렇기에 최근 조사된 결과에 의하면 장애인의 53.2%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 2005년 3월 현재 우리나라에 등록된 장애인 1백6십5만여 명임을 감안할 때, 사회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초교육조차 받지 못한 성인 장애인들이 아직도 90만 명 가까이 존재하고 있는 셈이다. 2005년 3월 제주지역 등록 장애인이 2만여 명임을 고려할 때, 적어도 1만 명 이상의 제주지역 장애인들이 기초학력 미달자로서 상위 수준의 교육을 받거나 직업기술 교육을 통해 재활할 수 있는 밑바탕조차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한편 제1차 장애인복지 발전계획(1998-2002)에 의거 장애학생 대학 특별전형입학 대상자가 1998년 45개 대학 355명에서 2002년 61개 대학 614명으로 확대되었고, 2002년 3

월 입학정원 250명 규모의 한국재활복지대학이 개교했다. 또 국립특수교육원에 「장애인교육복지정보센터」를 설치해 원격특수교육 방송연수를 실시했다. 아울러 장애인 평생학습 제도 마련 차원에서 학점은행제 실시기관으로 2곳을 운영했고, 2개 대학의 평생교육원에 장애인 관련 강좌가 개설되었으며, 2001년에는 이료 전문학사 학위과정이 신설되었다.

그러나 2001학년도 특수학교 고등부 졸업생의 진학률은 33.2%(전공과 입학 포함), 취업률은 25.3%이고, 고등학교 특수학급 졸업생의 진학률은 8.5%, 취업률은 43.2%로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고등부를 졸업한 학생 중 40% 이상이 '거리의 청소년'으로 남아 있는 셈이다. 우리의 현실은 장애인이 사회생활에 적응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기 위해서라도 일반인보다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반 고등학생들보다 낮은 대학 진학률을 보이고, 여타의 계속교육의 기회를 누리고 있지 못하다. 바로 이점에서 성인 장애인 대상으로 중등 교육 이후 계속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다른 한편 장애인 중에는 선청성 장애인만이 아니라 중도 장애인도 적지 않다. 특히 지체장애나 뇌병변, 심장, 신장 등의 장애자들 중에는 어릴 때부터 충분한 교육을 받았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로 장애를 입은 사라들이 적지 않다. 따라서 이들 중도 장애인들을 위한 평생교육 역시 시급하다.

## 2. 장애인 교육의 혁신

장애인 교육은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 교육기관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정상화(mormalization) 차원에서, 장애인과 일반인의 교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일반 교육기관이 장애인을 학습자로 맞아들이도록 그 문호를 개방하고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이 때 장애인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곳 가까이에서 쉽게 교육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고, 일반인들과도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 장차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일반 평생교육기관에 장애인이 학습자로 참여할 때, 일반인 학습자 역시 장애에 대한 기존의 편견을 버리고 이해를 새롭게 하며, 신체적, 심리적 혹은 사회적 장애인과 더불어 사는 게 오히려 정상적인 삶을 깨달으며, 나아가 일반인 자신 역시 비록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장애가 없다 할지라도 이기주의, 물질만능주의, 출세주의라는 또 다른 측면의 정신적 장애가 있음을 장애인을 통해 배울 수 있다. 이 점에 비추어 장애



인 평생교육을 장애인 교육기관에 한정할 게 아니라 일반인 평생교육기관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고, 모든 교육기관이나 프로그램에서 장애인 학습자를 받아들이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장애인 교육 패러다임의 혁신이 요구된다.

팔로웨이(Polloway) 등(1996)은 이와 관련해 장애인에 대한 접근이 '시설 중심'이나 '서비스 중심' 패러다임에서 '지원 중심'이나 '역량 강화' 패러다임으로 변화한 것이라 명명하였다(정동영 외, 2001:22-23에서 재인용). 시설중심 패러다임이 장애인에게 차별적 처치를 제공하는 데 목표를 두었고, 서비스 중심 패러다임은 특수학습이나 전환작업장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통합을 준비시킨 것이었다. 반면에 지원 중심 패러다임은 개인의 성공적인 학습, 작업경험, 적응을 위해 그 개인이 통합된 환경에 놓여져야 한다는 것이다. 장애인이 통합학교에 출석하여 교육을 받고(지원교육), 직무지도원의 지원 아래 직장에서 일하고(지원고용), 그들을 지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주택에서 생활하는 것(지원생활)이다. 다른 한편 역량강화 패러다임이란 장애인도 건강한 사회를 구성하는 정상적인 시민으로서 자신의 일을 통제하고 성공을 기대하며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가치로울 수 있으며 자신도 집단에 소속할 수 있다는 인념을 지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다.

### 3. 장애인 교육의 통합

교육기회의 확대나 혁신이 현실적으로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려면 무엇보다 장애인 교육 내의 통합이 필요하다. 장애인은 개개인의 특별한 욕구로 인해 지원을 요구하는 교육내용이 다양하다. 또 생애단계별로 그 요구가 많은 차이를 보이기에, 장애인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교육기관이나 프로그램 역시 다양하게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어느 특정한 장애인 교육기관이나 시설 혹은 단체가 장애인의 요구를 모두 지원하는 데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장애인에게 생애단계별로 적절한 교육적 지원을 평생 보장하려면 다양한 평생교육기관들이 서로 연계, 협력 내지 통합해야 한다.

이 같은 통합은 장애인 교육기관과 일반인 교육기관 간에도 이뤄져야 한다. 장애인의 입장에서는 필요에 따라, 여건에 따라 지리적으로 가까운 주민자치센터를 찾거나 전문적인 장애인 치료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기관이나 시설보다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각종 교육이 통합(community-based education)돼 있어야 할 것이다.

## IV. 우리나라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법과 전달 체계

### 1.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법

장애인의 평생교육 관련 법으로는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및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등이 있다.

<특수교육진흥법>은 교육인적자원부 관련 법으로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과정을 통해 교과교육·치료교육 및 직업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순회교육 및 파견교육 등의 형식으로 실시된다. 이 법은 1978년 제정되었고, 1994년 개정돼 특수학교에서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여기서 특수교육대상자란 “법 10조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가리킨다. 즉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자폐증을 포함한다), 언어장애, 학습장애, 심장장애·신장장애·간장애 등 만성질환으로 인한 건강장애 및 기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이다. 이 법에서 말하는 ‘특수교육대상자’는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고려될 뿐, 연령에 따라 구분하지 않고 있다. 형식상 연령에 관계없이 특수교육대상자로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법 14조에서 “교육감은 학령기가 지났거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가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치료기관 또는 가정 등에 특수학교 교원을 순회하도록 하거나 파견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특수교육의 주 대상자가 학령기 아동이며 학령기를 넘기면 특수교육기관에 취학하지 못하고 단지 순회교육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했다. 이 때 학령기 아동이란, 교육인적자원부의 <2005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 (2005.1.10) 중 “학령기가 지난 17세 이후의 특수교육 대상학생이 취학하고자 할 경우, 초등학교 졸업자격이 없는 자의 중학교 입학은 불가”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초·중·고등학교 재학 연령의 아동 즉 만 6세에서 만 17세까지의 아동이라 해석할 수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보건복지부 관련 법으로 1989년 제정되었다가 1999년 전면 개정되어 교육, 복지, 노동, 인권 등을 총체적으로 관장하는 종합법의 틀을 갖추었다. 이 법은 기본 시책으로 장애발생예방, 의료·재활치료, 사회적응훈련, 교육, 직업재활, 정보에의

접근,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 안전대책의 강구, 선거권 등 행사의 편의제공, 주택의 보급, 문화환경의 정비, 복지연구 등의 진흥, 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 교육과 관련해 법 제18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그 연령, 능력, 장애의 종별 및 정도에 따른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해 장애인 평생교육을 확실하게 보장하였다. 특히 직업재활과 관련해 법 제19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적절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직업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고용 및 취업후지도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은 노동부 관련 법률로서 장애인에 대해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후 적응지도 등에 대한 조치를 강구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해 자립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자립능력 제고를 위한 직업재활을 실시하기 위해 〈특수교육진흥법〉이 규정한 특수교육기관, 〈장애인복지법〉이 규정한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 규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시행규칙〉에 의거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과 〈안마사에관한규칙〉에 따른 안마수련기관 등을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으로 규정하였다. 또 법인격의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설립하고, 상시 10인 이상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등 전문요원을 양성, 배치하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을 조성, 운영하고 있다. 이 기금은 주로 정부 출연금과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구성되며,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지원고용사업 및 노동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공단에 위탁한 사업에 사용된다.

보건복지부 관련 법률인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와 관련해서 동법 〈시행령〉은 학교, 교육원·직업훈련소·학원·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도서관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사회복지시설, 생활권수련시설 및 자연권수련시설 등에 대해 매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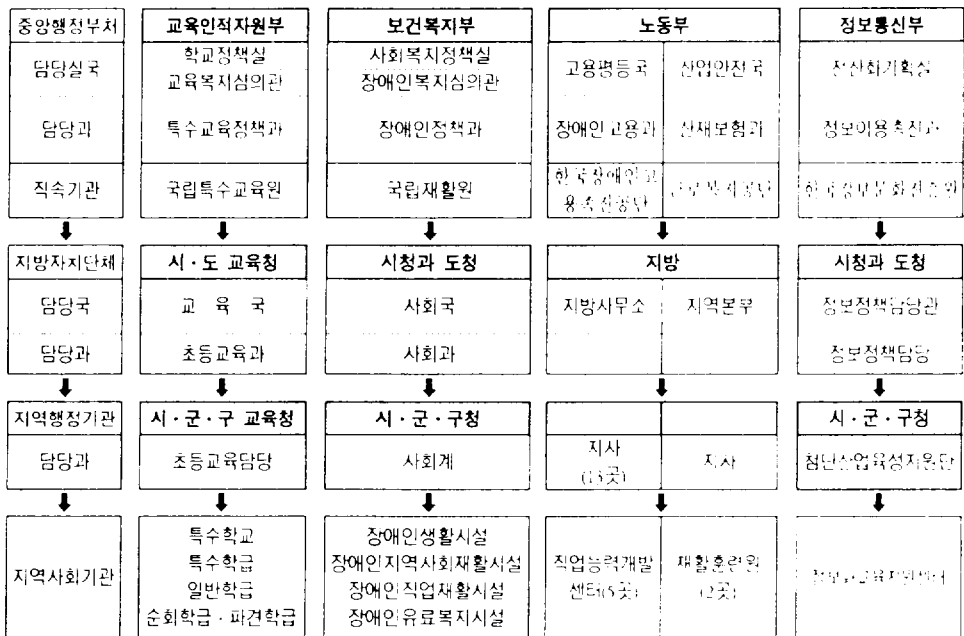
설(주차구역 등), 내부시설(계단 또는 승강기 등), 위생시설(화장실 등), 안내시설(점자 블록 등) 및 기타 시설(접수대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권장하고 있다.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은 정보통신부 관련 법으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는 장애인·노령자가 편리하게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화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요컨대 성인 장애인의 평생교육은 〈특수교육진흥법〉에 의한 ‘순회교육’,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과 ‘직업적응훈련’ 및 ‘직업훈련’,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한 ‘직업재활’,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보화교육’ 등을 받을 수 있다.

## 2.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 체계

우리나라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 체계를 선행연구(정동영 외, 2001:32)를 참고한 뒤, 정보통신부의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체계를 추가하고, 변경된 부서명을 고려해 재구조화하면 다음 〈그림 2〉와 같다.



〈그림 2〉 장애인 평생교육 전달 체계

위 <그림 2>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 장애인 평생교육은 크게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및 정보통신부 사업 속에서 각각 전개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특수교육진흥법>을 토대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장애인 교육을 담당한다. 이 기능은 학교정책실 교육복지심의관 산하 특수교육정책과에서 담당한다. 특수교육정책과의 지시와 감독, 그리고 지원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조직은 시·도 교육청의 교육국 초등교육과이고, 지역교육청에서는 초등교육담당이다. 이 조직은 특수학교, 특수학급, 장애인을 배치한 일반학급의 업무를 다룬다. 각급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해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학령기를 지난 장애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순회교육은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담당한다. 교육인적자원부 통계에 따르면 2004년 현재 특수학교 학생 1,031명, 특수학급 학생 519명, 일반학급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 657명이 순회교육을 받았다. 이 중 1,031명의 특수학교 학생은 184명의 특수학교 순회교육 담당 교사가 가정방문(384명), 시설방문(189명), 병원방문(11명), 학교방문(15명), 시설파견학급방문(432명) 등을 통해 방문 교육을 실시했다.

요컨대 특수교육진흥법 제14조 ②항이 명시한 '학령기가 지났거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순회교육은 무늬만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학령기가 지난 장애 성인에 대해 하는 일로서 '장애성인 야간학교' 지원을 들 수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2005년 현재 전국 14개 기관에서 275명의 자원봉사자가 262명의 장애 성인을 대상으로 야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 비인가 시설이고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곳은 4곳뿐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4곳의 법인 시설 중 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은 3곳에 각 3천만 원씩 9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에 명시한 장애인복지시설을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을 실시한다.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및 장애인유료복지시설 등을 가리킨다. 장애인생활시설은 장애인이 필요한 기간 생활하면서 재활에 필요한 상담, 치료, 훈련 등의 서비스를 받아 사회복지관을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하는 시설이다. 제주지역의 경우 제주장애인요양원, 제주시립 희망원 등이 이에 속한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이란 장애인복지관, 의료재활시설, 체육시설, 수련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상담, 치료, 훈련 등을 제공하거나 여가활동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다.

제주지역 내 네 곳의 장애인 복지관, 제주시 용담동 소재 작은 예수회 등이 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란 일반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이 특별히 준비된 작업환경에서 직업훈련을 받거나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이 시설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으로 지정되기도 한다. 제주지역의 경우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의 직업재활사업이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 끝으로 장애인유료복지시설이란 장애인이 필요한 치료, 상담, 훈련 등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시설운영자에게 납부하여 운영하는 시설이다.

이러한 장애인 평생교육은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정책실의 장애인정책과에서 총괄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도청의 사회과, 시·군청의 사회계가 맡는다.

노동부의 장애인 평생교육은 주로 장애인고용과를 통해 전달되는데, 산재보험과도 '산재장애인' 개념을 통해 중도장애인에 대한 재활훈련을 실시한다. 장애인고용과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과 그 지사 및 직업능력개발센터(일산, 부산, 대전, 전남, 대구)와 장애인직업재활실시기관을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반면에, 산재보험과는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와 지사 및 재활훈련원(안산, 광주)을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을 실시한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에, 근로복지공단은 일부 부서에서 산재장애인의 직업재활 업무를 담당한다.

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장애인 평생교육은 정보화 교육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정보화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제주지역의 경우 네 곳의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정보화교육지원센터가 설치돼 장애인의 정보화 교육을 돕고 있다. 이 업무는 정보통신부 정보이용촉진과에서 맡고 있고, 정보통신부 산하단체인 한국정보문화진흥원과 각 지역의 정보화교육지원센터가 시행한다.

## V. 제주지역 장애인 평생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

### 1. 제주지역 장애인 평생교육의 현황

#### 가. 특수학교의 평생교육

제주지역의 경우 2004년도에 4명의 순회교육 담당 교사가 가정방문(18명), 시설방문(10명), 병원방문(1명), 시설과견학급방문(12명) 등으로 총 41명의 특수학교 학생을 방

문했다. 41명의 학생 중에는 소위 학령기를 지난 18세 이상의 장애인이 6명 포함돼 있으나, 이들 모두 특수학교 학생들뿐이지 학교 밖의 사람들이 아니다. 다른 지역의 경우도 순회교육 대상자는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학생들뿐이었다. 특수교육진흥법에는 학령기를 지난 성인에 대한 순회교육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인원 부족, 예산 부족, 교육인적자원부의 행재정적 지원 부족 등을 사유로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

#### 나. 장애인복지시설의 평생교육

제주지역 내 장애인복지시설은 적지 않다. 그 중 종합복지관으로는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사단법인 제주도장애인총연합회),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사회복지법인 춘강), 서귀포시장래인종합복지관(사회복지법인 춘강),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사회복지법인 삼다) 등 4곳이 있다. 이들 장애인 복지관의 평생교육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춘강에 의해 1989년 11월 개관했다. 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한 정보화 교육, 각종 발달단계의 장애인을 위한 치료교육, 일반학교 교사 비장애 부모를 위한 통합교육지원 프로그램, 복지관 이용자의 부모를 위한 가족지원 프로그램, 장애 청소년의 방과 후 프로그램, 자립생활 지원 프로그램, 여러 유형의 자조모임 및 동호회 운영, 지역 주민 대상의 장애 이해 교육, 자원봉사자 교육 및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제주지사에 의해 직업재활센터로 지정돼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지원고용, 취업알선, 적응지도, 직종개발 등 장애인직업재활기금사업을 하고 있다.

둘째, 서귀포시장래인종합복지관은 1999년에 세워졌다. 다른 장애인종합복지관과 대동소이한 사업을 전개한다.

셋째,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00년 2월에 개관하여 지금까지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첫 해는 서예, 한지공예, 일어, 영어, 수지침, 노래, 배드민턴, 탁구 등 8개 프로그램에 연 인원 2,438명이 참석했다. 해마다 참여 인원이 증가하여 2004년에는 9,972명이 참여했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정보화교육, 디지털 카메라 클럽 등이 개설 되는 등 프로그램도 다양해졌다. 그 외에도 각종 상담, 자립생활지원사업(동료상담 등), 의료재활, 교육재활(부모교육 등), 직업재활(직업전 훈련반 등), 사회심리재활(장애인부모 교육 등), 재가장애인복지사업, 사회교육사업(노인 대상 론볼링 등), 지역사회자원개발사업(자원봉사자 교육 등) 등이 있다. 이 곳 실무자의 말에 따르면 장애인들이 각종 프로그램에 꾸준히, 성실히 참여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결과 어떤 교육적

성과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과정에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 세상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는 것이 더 큰 성과라 한다. 예컨대 사고로 오른팔을 못 쓰게 된 어느 중도 장애인이 왼손으로 서예를 공부하면서 자신과 세상에 대해 새롭게 눈 뜬 이야기나, 뇌출혈로 하반신 마비가 된 어느 여성 장애인이 미술 프로그램, 동료상담, 컴퓨터 교육 등에 꾸준히 참석하면서 자신의 장애를 수용하고 마음이 많이 밝아졌다.

넷째,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은 2003년에 개원했다. 다른 장애인 복지관과 유사한 형태의 사업을 하나, 그 주된 대상이 시각장애인이라는 점에서 특성을 지닌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장애인복지관은 장애 아동 대상으로 교육재활 사업을 하면서 동시에 장애 성인을 대상으로 직업재활, 자립생활지원 사업, 정보화 교육, 여러 가지 스포츠 및 여가 교실과 다양한 자조교실 및 동호회 활동 등을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에 이바지 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일반인들을 받아들여 장애인과 통합교육을 시도 하고 있긴 하나,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장애인종합복지관 외에도 다양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에 정회원으로 가입한 제주지역 장애인복지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이 중 평화의 마을, 혜정원직업재활시설, 춘강장애인근로센터(제주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제주지사가 선정한 직업재활사업실시기관이고, 여기에 농아인협회 제주도지부도 추가로 포함돼 있다.

<표 1> 제주지역 장애인복지시설

시설의 종류	시 설 명
정신지체	송 죽 원
정신지체	아 가 의 집
정신지체	제 주 애 덕 의 집
중증요양	제주장애인요양원
판매 시설	곰두리제주공판장
작업 활동	직업재활시설어울림터
근로 시설	춘강장애인근로센터
보호 작업	평 화 의 마 을
작업 활동	한라원작업활동시설
작업 활동	혜정원직업재활시설



#### 다. 장애인단체의 평생교육

성인 장애인을 교육하기 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법적, 행·재정적 지원이 빈약한 상황에서 장애인 스스로 나서서 장애인에게 구체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장애인의 교육권을 신장시키려 애쓰는 것은, 장애인 문제와 관련하여 시민사회의 자율적 영역을 넓혀나가는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제주지역 장애인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평생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체장애인협회 제주도지부에서는 바다체험 프로그램을, 시지회에서는 켈트(참여자 7명)를 운영하며, 북군지회에서는 석부작(참여자 10명)과 천연염색(참여자 10명)을 교육하고 있다.

둘째, 정신지체애호인협회 제주지부에서는 컴퓨터, 칼라믹스, 볼링, 풍물, 한지공예, 오름체험 등 비교적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이 단체가 주간보호실, 그룹홈을 운영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셋째, 신장장애인협회 제주지부에서는 한지공예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넷째, 한국농아인협회 제주도지부에서는 자신들의 특성을 살려 수화교실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끝으로,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12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중학교 입학, 고등학교 입학,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대비 야학을 운영하고 있다.

#### 라. 일반 교육기관의 장애인 평생교육

탐라장애인복지관 고하미의 조사(2005. 6)에 따르면, 제주도내 성인 장애인의 교육 참여 욕구에 비해 장애인의 실제 참여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 평생교육 기관에 대한 장애인의 참여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설문에 응답한 20곳 가운데 단지 3곳만이 켈트교실, 한지공예, 요가프로그램에 장애인이 참여하고 있었다. 한지공예는 정신지체장애인 10명을 별도 모집해 운영한 사례이고, 켈트와 요가는 각각 장애인 1명이 일반인들과 함께 교육받은 사례다.

이처럼 장애인의 일반교육기관의 평생교육 참여가 저조한 이유에 대해 위 설문조사의 응답자들은 적절한 교육프로그램 부재(25%), 편의시설 불편(23%), 전담강사 부재(23%) 등을 꼽았고, 교육장소로 이동하는 데 따른 교통이용 불편, 장애인에 대한 편견 및 장애인의 참여의지 부족 등도 이유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일반 교육기관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장애인기관과의 연계를 가장 많이 응답했고, 다

음으로 편의시설 설치, 홍보, 수강료, 기타 장애인의 참여 의식 순이었다.

## 2. 장애인 평생교육의 문제점

장애인 복지관 실무자와의 면담, 앞서 분석한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석 등을 통해 장애인 평생교육의 문제점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가 일단 양적인 면에서 크게 부족하다. 무엇보다 학령기 이전의 유아 장애인이나 학령기를 넘어선 성인 장애인의 교육기회를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1989년에 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장애인이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를 추진하기 위한 자원 조달과 관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해 장애인 복지에 대해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음을 드러냈다. 따라서 장애인 교육에 대한 규정은 자칫 선언적 의미로 끝나 버리기 십상이다.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진흥법의 순회교육에서 알 수 있듯이, 성인 장애인의 교육을 돕기 위해 마련된 법 조항조차 관계 공무원의 성인 장애인 교육에 대한 인식 부족 탓인지 아니면 인적, 물적 자원 부족 탓인지 거의 사문화돼 있다. 또 제주지역의 경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해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의 지원을 받는 직업재활수행기관이 단지 4곳에만 한정돼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인정 직업훈련원이 직업재활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도 적지 않은 데 제주지역의 경우 어느 한 곳도 직업훈련원으로 인정받지 못한 처지이다.

둘째, 장애인 평생교육의 프로그램의 다양성, 연속성 및 전문성이 부족하다. 실제로 사회에 나가 준비한 직업훈련을 통해 살아가려면 초급을 넘어 중급, 고급 수준의 직업 기술교육이 요구되나, 장애인 직업준비 교육은 대체로 초보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교육수준이 낮은 것은 유능한 전문강사를 섭외하지 못한 탓이기도 한데, 이는 장애인 평생교육 예산 부족과도 관련된다. 사실 처음 몇 번은 자원봉사 차원에서 전문 강사가 도움을 주지만, 이들에게 장기간 저렴한 강사료로 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다.

셋째, 장애인 평생교육이 ‘정상화’ 이념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제주 지역 장애인 평생교육은 대체로 장애인만을 위한 평생교육에 머물고 있다. 장애인이 평생교육을 통해 정상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일반인 역시 평생교육의 장면에서 장애인에 대한 이해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

넷째, 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이나 단체 간, 그리고 장애인 평생교육기관과 일반 평생교육기관 간 협력 체제가 부족하다. 국가나 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단체에 지원하는 각종 예산이 주로 실적 중심으로 배정되다 보니, 장애인복지시설 간에 예산 확보를 위한 눈에 보이지 않는 치열한 경쟁이 초래된다. 이 상황에서 장애인복지시설의 실무자들은 교육이나 복지의 수요자인 장애인 편에서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조직의 이익을 우선 고려하게 된다. 상대 시설이나 단체의 교육정보를 장애인에게 잘 알려주지 않으면서 장애인을 자신의 조직 내에 묶어 두려는 경향이 있다. 이 점은 장애인 평생교육기관과 일반 교육기관 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VI. 외국의 장애인 평생교육의 법제화

미국에서 장애인 신체 장애인에 대한 교육과 치료 프로그램이 출현하고 이를 법제화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때였다. 전쟁 중 부상을 당한 군인들의 직업재활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했고, 그 결과 1920년에 직업재활법이 제정돼 일반 시민들에게도 적용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는 장애 군인에 대한 교육 및 직업재활 상담과 고용지원 등이 등장했고, 1954년에는 직업재활법 수정안이 통과되어 일반 장애인들도 장애 군인들과 같은 서비스를 받게 되었다.

1973년에 제정된 재활법은 장애인의 자기주장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문화했다. 그 결과 연방정부가 장애인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학교, 대학 및 사회 서비스 기관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했다. 특히 대학이나 중등 교육 이후의 평생교육기관의 학생 모집, 입학 및 교육의 실제 상황에서 각종 차별을 철폐하려 노력했다. 그리하여 장애인에 대한 진단의 보편화, 장애인에게 방해가 되었던 건축물의 장애요인 제거를 통한 접근 가능성 제고, 장애인을 위해 각종 프로그램의 유연성 제고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1976년에 제정된 평생학습법에서는 노인, 부모, 여성, 퇴직자, 성인교육 등에 대한 공적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 교육에 대한 규정은 없었다. 하지만 이미 1973년에 제정된 재활법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에, 미국의 장애인들은 일반인과 동일한 평생교육의 기회를 누리는 데 어떤 방해도 받지 않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독일에서는 1969년에 제정한 직업교육법에 장애인 훈련 촉진 규정을 삽입했다. 1974년 제정한 중증장애인의 사회통합법에서는 장애 정도가 너무 심해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 특별한 직업훈련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영국은 1970년에 장애인법을 제정해 장애인의 교육과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했고, 덴마크는 1968년에, 노르웨이는 1976년에 장애인의 교육의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명시한 법을 제정했다(Niemi et.al, 1989).

일본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교육 규정보다는 일반인의 평생교육 규정 즉 사회교육법에 따라 장애인 평생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사회교육법에 의거 설립된 일본 동경도(東京都) 국립시(國立市) 공민관에서는 일반청년과 장애청년간 교류의 장을 제공하는 찻집을 운영한다. 장애인이 일하면서 배우고 운동을 하고 즐기고 책을 빌리는 등 공민관은 장애인의 정상화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공민관 내에서는 시의 사회교육과와 복지사무소가 협력해 마련한 장애청년학급이 운영되고 있다. 이 학급은 다양한 연령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밴드, 뮤지컬, 노래 등의 음악과정과 건강, 자연, 수공, 생활 등 7개 교과를 운영한다. 한편 일본 장애인들의 직업훈련은 직업안정법에 의거한 공공직업안정소와 일본장애인고용촉진협회에서 운영하는 지역장애인직업센터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정동영 외, 2001).

## VII. 결론 : 제주지역 장애인 평생교육의 제도화 방안

제주도내 장애인의 수가 점차 늘고 있다. 2002년 9월 현재 15,274명에서, 2003년 12월에는 17,829명으로 1년 6개월 사이에 2,500여 명이 늘었다. 또 다시 1년 후인 2004년 12월에는 19,634명으로 2,000명 가까이 증가했고, 2005년 3월말 현재는 20,463명의 장애인 등록돼 있다. 이처럼 장애인은 증가 추세에 있는 반면에 장애인 평생교육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크게 뒤져있다.

그렇다면 제주지역 장애인 평생교육의 제도화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평생교육의 일반적 특성, 우리나라와 특히 제주지역 장애인 평생교육의 현실 및 외국의 장애인 평생교육의 법제화 등에 비추어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가지로 제시했다.

## 1.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접근성 제고

첫째, 장애인 평생교육이 지리적, 물리적으로 장애인의 친숙한 환경 가까이 존재해야 한다. 장애인이 삶의 문제를 풀어 가는 데 학습활동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평생교육 시설이 가까운 지역사회에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지역사회 내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는 매우 낮아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특수학교의 시설을 지역의 장애 성인들에게 개방하고, 이를 이용해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지역의 초, 중, 고등학교나 주민자치센터와 같이 지리적으로 가까운 곳에 있는 교육시설이 최소한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다면 장애인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법·제도적으로 장애인 누구나 접근 가능해야 한다. 특히 학령기를 넘은 비문해(非文解) 장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강구돼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의 평생교육법에 평생교육시설의 하나로 '성인기초교육시설'을 추가하거나, 별도로 <문해교육지원법>을 제정해 장애인은 물론 일반인 중 문해교육이 필요한 사람들, 그리고 외국인노동자들과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그 어떤 차별도 없이, 한글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기초 지식 등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

셋째, 장애인들이 원하는 내용을 학습하는 데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최근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장애인복지관의 평생교육은 물론이고, 사회복지관, 주민자치센터 등 공공 기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나아가 시민사회단체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장애인이 저렴한 가격 내지 무료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문호를 활짝 열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의 일부를 장애인의 평생교육비로 지원하는 것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것도 쉽지 않다면 '세계평화의 섬'을 지향하는 제주도가 '제주평생학습기금'을 조례로 제정해 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소외계층이 최소한의 성인기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우리나라 장애인 평생교육을 '복지모형' 차원에서 제도화하는 길이다.

넷째, 장애인들이 시간적 부담감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야 한다. 예컨대 장애인들이 어느 곳에서든 기초교육을 다른 곳에서든 직업재활 훈련을 받느라고 이동하는 데 따른 시간적 부담을 줄여 줄 필요가 있다. 할 수만 있다면 가까운 지역사회 생활권 안에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다섯째, 장애인들이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데 따른 기본적 소양을 갖추도록 학습 지

원을 하는 것이다. 장애인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학교를 떠난 지 오랜 이들에게 기초적 지식과 최근 정보, 특히 컴퓨터 사용 방법 등을 가르치는 것이다.

여섯째, 장애인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평생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료 의식을 지닌 이웃을 형성해 정서적 지원을 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를 위해 이미 조직된 '장애인 자조 동아리'를 활성화하고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정상화'의 철학에 비추어 일반인 교육 프로그램에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일반인들 역시 장애인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통합교육'의 풍토 조성이 요구된다.

일곱째, 장애인 관련 현안이나 필요한 교육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야 한다. 이미 부분적으로 장애인단체나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통해 추진되고 있긴 하나, 지역사회의 여러 평생교육기관이나 시설에서 운영하는 교육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 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연속화

다양한 배경을 지닌 장애인들의 다양한 학습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애단계별 학습욕구 충족을 위해, 특히 초등 수준의 기초교육과 중등 이후의 계속교육 차원에서 직업훈련과 직업재활을 포함한 장애인 교육 프로그램의 종류가 좀 더 많아지고, 해당 프로그램은 또한 수준별로 단계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영역을 지역사회 내에서 수평적으로 확대하는 것만이 아니라, 보다 체계적이고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연속적인 학습의 길' (learning pathway), (McGivney, 1999)을 보장하는 것이다.

선진국의 사례처럼 평생교육법의 체제 내에서 성인 장애인의 최소한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2년제와 4년제 대학의 학위과정 혹은 비학위과정으로 장애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체제와 물리적, 심리적 여건을 갖추는 것도 한 가지 대안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이와 관련해 장애인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상담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 3. 장애인 평생교육간, 그리고 장애인교육과 일반교육간 통합성 제고

장애인 교육기관이 아니라 장애인을 중심에 놓고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장애인 교육을 바라볼 때, 장애인 교육은 마땅히 통합되어야 한다. 장애인 교육기관이 지금까지 교육 분야, 복지 분야 및 노동 분야 등으로 분리된 상황에서 장애인에 대한 교육 서비

스를 충실히 제공하려면 교육기관간 정보 교류를 활발히 전개하고, 장애인 학습자에게 개방된 자세로 교육기회를 안내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정상화'라는 장애인 교육의 정신에 비추어 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 교육받는 프로그램들이 더욱 많아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평생교육의 전달 체제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중앙행정부처의 전달체제도 잘 갖추어져야 하나,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전달체제의 확립은 더욱 중요하다. 다음은 장애 학생부모와 장애 성인 부모의 의견이다(정동영 외, 2001:72-73에서 재인용).

장애학생의 부모로서 장애인이 발생하면 그 짐을 함께 나누어질 수 있는 사회 구조가 하루 빨리 구축되었으면 합니다……(중략)……우선 한 가지만 말씀드리다면 지역사회에 어떤 형태든지 장애관련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있었으면 하고, 지역별로는 중증장애성인이 학령기 이후 삶을 누릴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이 소규모로 다양하게 설치되었으면 합니다 (장애학생 부모 P).

장애인을 가르치는 곳들은 집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곳이어서 딸 혼자서 다니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동네에 있는 체육시설을 장애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하고 지도자를 배치하는 등 발상의 전환은 불가능한가?', '지역사회의 공공시설들은 대부분 오후 6시까지만 개방하는데, 6시 이후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묘안은 없는가?'……(중략)……저는 단기적으로 장애인의 지역사회 공공시설 활용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재정 지원 등을 하면 지금보다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장애성인 부모 K).

## 〈참 고 문 헌〉

- 고하미(2005), 탐라장애인복지관 평생교육 추진과정과 성과, 제주 : 탐라장애인복지관.  
교육인적자원부(2005), 2005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  
김민호 외(2002), 평생교육제도와 노동교육, 서울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신일(1983), 평생교육의 사회적 배경,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한국평생교육기구(공편),  
평생교육의 기초와 체제, 서울: 법문사, 53~71.  
김신일 · 김재웅(2002), 평생교육경영학,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노종희 외(1996), 교육제도론, 서울 : 도서출판 하우.  
부현철(2003), 제주지역 장애인직업재활사업의 발전을 위한 제언, 제주 :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정동영, 정동일, 정인숙(2001), 장애인 평생교육 협력체제 구축방안 연구, 안산 :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장애인 · 노인 ·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장애인복지법, 정보격차해소에관한법률, 특수교육진흥법.  
Kirpal, P. N.(1976), Historical studies and the foundations of lifelong education, Dave, R. H.(ed.) *Foundations of lifelong education*, Oxford : UNESCO Institute for education, 97~128.  
Klugerman, P.B.(1989), Developmentally disabled adult learners, Merriam, S.B. & Cunningham, P.M.(ed.), *Handbook of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San Fransico : Jossey-Bass Inc, 599~609.  
McGivney, V.(1999), *Informal learning in the community : a trigger for change and development*, Leicester : NIACE.  
Niemi, J.A. et.al.(1989). Disabled adults : educational provision, Titmus,C.(ed.), *Lifelong education for adults : an international handbook*, Oxford: Pergamon Press, 335~339.  
Polloway, Smith, Patton & Smith(1996), Historic change in mental retardation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Education and Training in Mental Retardation and Developmental Disabilities*, 31(1), 3~12.